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5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자체장의 의견 수립,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시기, 계획에 포함될 내용,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 현황 등 조사내용 및 방법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료·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등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교육훈련 계획의 제출, 교육훈련 실적 보고 등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등

자. 석재산업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

차.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석재채취 또는 가공업의 등록 요건(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 작성·관리 등

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명칭, 대표자,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등

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카.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전통 석재제품 전시시설 설치 등 지원대상,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하.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석재산업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석재산업 종합정보 시스템구축·운영 등

거.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인정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요건(자격증, 수상, 경력, 기능 등)과 전통 석재제품의 요건(명인의 제작참여) 및 인증·인정을 위한 기준 등

너.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유효기간 3개월 전 연장신청 안내, 연장 신청 시 평가기준 및 연장 유효기간(제품인증 : 3년, 명인인정 : 5년) 등

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된 석재채취업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지역 등

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타당성 조사의 시행,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제출, 석재산업 진흥지구 심사단의 구성·운영, 지정 개요 고시 등

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준용

버.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육성계획 집행실적·향후 집행계획 점검 및 평가, 지정취소·면적 조정·개선권고 사유 및 절차 등

서. 석재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지자체장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사항 등

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처.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대통령령 제 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개요를 고시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법에서 정한 석재사업자 지원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 · 방법 ·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

*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석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 개발 및 산업화
지원, 전통석재 전시 · 홍보 시설 설치 · 운영 지원, 석재사업자 및 석재산업
진흥지구 지원(보조 · 융자, 컨설팅, 기술지원 등)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사업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 현황 및 가격동향
2. 석재산업의 업종별 분포 및 석재제품 생산현황
3. 전통 석재제품 이용현황

4. 석재산업 관련 기술보급 현황 및 연구·개발 추이

5. 석재산업 관련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 재해 예방 실태

8.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범위)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석재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마련·관리 경비
4.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절할 것
2.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를 확보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등) ① 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에서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양성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 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교육훈련

이수기준 등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작성한 교육훈련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6.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지정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개발 경비 지원) ① 산림청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

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을 작성·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

1. 석재채취업등의 명칭
2. 석재채취업등의 대표자
3. 석재채취업등의 소재지
4. 석재채취업등의 시설·장비 보유 사항
5. 석재채취업의 기술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
6. 석재가공업의 상시근로자 선임에 관한 사항 및 공장 등록사항

② 석재채취업등으로 등록한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양도 또는 합병 시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홍보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전시할 석재 및 석재제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에 필요한 경비
3. 전통 석재제품 등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석재산업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홍보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전통 석재제품 등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전통 석재제품 등의 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화 수요가 높을 것
3. 해당 전통 석재제품 등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시·홍보 효과가 높을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홍보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석재산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우수 석재의 확보를 위한 석재자원 조사
2. 석재사업자의 경영규모를 키우기 위한 토지의 취득
3. 석재제품 생산을 위한 우수 석재의 구매
4. 석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석재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총사업비 및 소요자금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석재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4와 같다.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이하 “인증·인정”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은 3년,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은 5년으로 한다.

제17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17조에 따른 석재산업진

흥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1.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2.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석재채취업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으로 석재산업의 생산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 계획이 있는 지역일 것

4.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 지역 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기관이 있을 것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필요성·적합성·경제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의 채취·가공·유통·판매·수출입 등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과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지역의 석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재산업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사단(이하 “진흥지구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진흥지구 심사단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심사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타당성 조사결과, 육성계획 및 지구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계획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면적의 조정이나 개선

의 권고 또는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육성계획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석재사업자의 불법행위나 관리부실 등으로 환경피해·재해위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5. 진흥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진흥지구의 지정취소 또는 면적의 조정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6. 개선 권고를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지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선의 권고나 면적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등 변경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21조(석재사업자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과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 지원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용자 및 기술지원
5.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 심의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인정 심의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실시
8.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위한 시료의 검정
9.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자료제공의 요청(제1호부터 제8

호까지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2. 19.>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영 제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영 제8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교육훈련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영 제8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 제8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영 제8조 제1항제5호	지정취소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 제8조 제1항제6호 및 제3항	지정취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기준(제1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종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1. 건축용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량 0.7 세제곱미터 이상	종류별 등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굴착기 1대 이상	28톤 이상	
			다) 운반장비 1대 이상	15톤 이상	
			라) 와이어소(Wire-saw: 줄톱) 1대 이상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 석재채취업	3억원	6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량 0.7 세제곱미터 이상	
			나) 굴착기 1대 이상	28톤 이상	
			다) 운반장비 1대 이상	15톤 이상	
			라) 와이어소(Wire-saw: 줄톱) 1대 이상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	
3. 조경용 석재채취업	2억원	4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량 0.7 세제곱미터 이상	
			나) 굴착기 1대 이상	28톤 이상	
			다) 운반장비 1대 이상	15톤 이상	

4. 토목용 석재채취업	2억원	4억원	가) 로더(loader: 올리개) 1대 이상	버킷(bucket: 석재 등을 퍼 올리는 통)용량 0.7 세제곱미터 이상			
			나) 굴착기 1대 이상	28톤 이상			
			다) 운반장비 1대 이상	15톤 이상			
5. 건축용 석재가공업	-		가) 관계법령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나) 절삭기			-				
6. 공예용 석재가공업			가) 관계법령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	-			
			7. 조경용 석재가공업			가) 관계법령에 따라 석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	-
나) 조경석 가공기						-	

비고

1. 자본금
-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나.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서,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석재채취업등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시설·장비
-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 나. 장비는 그와 같은 등급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 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사용기간 명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등록 취소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 라. 시설·장비의 규격 중 로우더 및 굴착기의 버킷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때에는 1개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1종류의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많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건축용 또는 공예용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공예용 석재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아. 영업정지 기간에 석재채취 또는 가공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등록 취소		

■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1. 2. 19.>

전통 석재제품 인증·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전통 석재제품 인증기준

총점 75점 이상인 제품을 전통 석재제품으로 인증한다. 다만, C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내용	점수
1) 전통성	A.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하여 적용한 제품	25
	B.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하여 적용한 제품	20
	C. 전통 석공예 기법 원형을 다소 변형하여 적용한 제품	15
2) 재료	A.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고, 부재료도 100퍼센트 국내산인 경우	15
	B.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퍼센트 국내산이고, 부재료의 일부는 국내산이 아닐 경우	10
	C. 주재료로 사용한 석재가 100% 국내산이 아닐 경우	-30
3) 생산관리	A. 별도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제조작업표준에 의해 생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15
	B. 별도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작업방법·작업조건·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제조작업표준과 상이하게 작업하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10
	C.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	5
4)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생산참여	A.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해당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과정에도 참여하는 경우	25
	B.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해당제품 생산과정에만 참여하는 경우	15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5) 상품성	A. 해당 제품의 전통·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20
	B. 해당 제품의 전통·예술적 가치가 높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15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2.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기준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전통 석공예 기법을 보전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통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공예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명예보유자는 제외한다)
- 2)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석공예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식석공 중 가공석공 종류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석공예 직종으로 입상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석공예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석공예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석공예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총점 75점 이상인 자를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C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내용	점수
1) 전통성	A.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대로 실현 가능한 경우	25
	B.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가깝게 실현 가능한 경우	20
	C. 전통 석공예 기법을 원형에 다소 미흡하게 실현 가능한 경우	15
2) 경력 및 활동사항	A.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20년 이상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20
	B.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5
	C.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및 활동실적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그 업에 종사하는 자	10
3)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A.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25
	B.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5
	C.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5
4) 산업성	A.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 경우	25
	B. 해당 전통 석공예 기법이 생산, 판매 및 수출 등을 통해 산업성을 갖추고 석재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정도가 보통인 경우	20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5
5) 윤리성	1) 석재산업 분야의 직업 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춘 자로서, A.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 등에게 전통 석재제품 제조와 관련된 추천을 받는 등 평판이 우수하고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의 사명감이 큰 경우	5
	B. 지역주민, 동종 업계 종사자 및 고객의 평판이 보통인 경우	2
	C. A 또는 B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2)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가장 무거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1호	250	500	1,000
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8조 제2항제2호	100	300	500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을 받은 자	법 제28조 제1항제2호	250	500	1,000
마.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3호	250	500	1,000
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4호	250	500	1,000
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8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294